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기한 및 완료기한 규정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0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기한 및 완료기한 규정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17.
3. 회부연월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군·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기한 및 완료기한 규정 등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착수기한(검토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및 완료기한(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을 규정하는 한편,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유형·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의뢰 전 전문기관과 준비 절차·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 ② (생략)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u>기관</u> 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 ----- <u>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에</u> ----- -.
<신설>	④ <u>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성격이나 조사·분석의 난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완료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선행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⑦ 공사의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전문기관과 준비절차,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1)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기한 및 완료기한 법정 (안 제65조의3제4항·제5항)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착수기한 및 완료기한에 대한 법률규정이 부재한 상태임.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투자사업 관계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의 착수기한(검토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일 이내) 및 완료기한(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이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지침」에서 검토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¹⁾, 개정안은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제

1)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2024.3., p.27.,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기됨.

그러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기한 및 완료기한은 관련 당사자와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지침보다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타당성 검토의 착수기한과 완료기한을 각각 규정하는 경우 개별 사정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기한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지침」상 과업기간을 6개월로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는 제출자료의 충실성, 관계기관 협의, 상위계획 부합 여부 등의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의뢰일 기준으로 착수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임.

○ 과업 기간

- 타당성 검토의 과업 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함

(2) 타당성 검토 기한 단축사유 규정 및 기간단축 방안 사전 협의 등(안 제65조의3제6항·제7항)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시 시급성이 명백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검토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65조의3제5항 단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완료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간 단축을 별도로 규정한 제6항과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양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축사유 및 타당성 검토 의뢰 전문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은 다소 실무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 또는 시행지침 등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지침」상 검토기한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분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협의로 조정²⁾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은 동 지침의 면제 규정³⁾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기간 단축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2)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2024.3., p.27.,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과업 기간

- 타당성 검토의 과업 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내용이나 조사·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2024.3., p.1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면제 대상 사업

○ (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2호)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 (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4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5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문 의 처
02)6788-5333